제3자이의

[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. 1. 31. 2018가단8561]



【전문】

- 【원 고】 부산수련동문회
- 【피 고】 포이베대부 유한회사 외 1인
- 【제1심판결】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. 1. 31. 선고 2018가단8561 판결
- 【변론종결】2018. 12. 20.

【주문】

- 1. 피고 포베이대부유한회사가 소외 1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19. 선고 2015가소548978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부산△△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(계좌번호 1 생략)호, 계좌번호 (계좌번호 2 생략)호 예금채 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2550호와 2018타채103498호로 한 강제집행과 피고 2가 소외 1에 대한 법무법인 □□□□ 2918년 제◇◇◇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부산△△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(계좌번호 1 생략)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5577호로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.
- 2. 이 법원이 2018카정6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. 8. 29.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.
- 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- 【청 구 취 지】주문과 같다.

[이유]

- 】1. 기초사실
- 가. 소외 1은 2018. 1. 1. 선출된 원고의 대표자이다.
- 나. 피고 포베이대부 유한회사(이하 '피고 포베이'라 한다)는 소외 1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19. 선고 2015가소5489782 양수금 판결(이하 '이 사건 판결'이라 한다)을 가지고 있고, 위 판결금 채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.
- "15,706,219원과 그 중 3,970,000원에 대하여 2015. 5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돈"다.
- 피고 포베이는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3채무자 △△신용협동조합(이하 '△△신협'이라 한다)의 소외 1에 대한 예금채무 450만 원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25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받아 집행하였고, 다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349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△△신협의 소외 1에 대한 예금채무 12,312,180원을 압류했다.
- 라. 피고 2는 소외 1에 대한 법무법인 □□□□ 2018년 제◇◇◇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△△신협의 소외 1에 대한 예금채무 20,115,060원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557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없는 사실, 갑2호증, 갑3호증의1, 2, 갑4호증, 을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소외 1이 △△신협에 개설한 개좌 중 정기예탁금 계좌(번호 (계좌번호 1 생략))와 자립예탁금 계좌(번호 (계좌번호 2 생략))(이하 정기예탁금 계좌와 자립예탁금 계좌를 '이 사건 예금계좌들'이라 한다)는 원고가 소외 1 명의로 개설하여 전 회장이 △△신협에 맡겼던 원고의 회비를 찾아 새로운 회장 명의로 예탁한 것인데, △△신협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며 △△신협의 담당직원에게 자금이 원고의 회비이고 원고의 통장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밝히고, 원고의 인감을 사용하여 개설한 예금계좌로, 위 계좌에 대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1이 아닌 원고이고, 따라서 위 예금채권은 원고의 채권이므로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한 판결 또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한 위 채권에 대한 집행은 부당하다.

나. 피고 포베이의 주장

원고는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고, 이 사건 예금계좌들의 예금계약 당시 △△신협에게 원고의 고유번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대표자인 소외 1 개인 명의로 실명확인하고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예금계좌들의 예금계약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1 개인이다.

소외 1도 자신이 예금주라고 인정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였다.

3. 판단

가. 인정사실

- 1) 원고는 안마 수련원을 이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예정자로서 부산, 경남에 거주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, 시각장애 안마인들의 수련, 단결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1987. 12. 2. 조직된 비법인 단체로, 대표자인 회장은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고 임기는 2년이다.
- 2)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8. 9. 13. 해운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발부받는 한편, 같은 날 사업자등록 도 하였다.
- 3) 소외 1은 2018. 1. 1.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전 회장인 소외 2로부터 원고의 회칙, 회원명부, 회원회비 2,000만 원이 예탁된 △△신협 통장과 원고의 인감 등을 인계받았고, 2018. 1. 3. 전 회장인 소외 2와 부산 동구 ○○동에 있는 △△신협에 가서 소외 2가 자신의 명의로 예탁하였던 정기예탁금 등 원고의 회비 22,645,349원을 인계받아 △△신협에게 조합거래신청을 하였다.
- 4) △△신협은 소외 1의 조합거래신청에 따라 '소외 1'의 실명확인을 거쳐 원고의 인감을 사용하는 정기예탁금 계좌(번호 (계좌번호 1 생략))와 자립예탁금 계좌(번호 (계좌번호 2 생략))를 개설하여 정기예탁금 계좌에 2,000만 원, 자립예탁금 계좌에 2,645,349원을 예치하였다.
- 5) 위와 같이 조합거래신청을 하며 소외 1은 금융거래목적을 "동문회 통장"으로 기재하였고, △△신협은 위와 같이 새로 개설된 계좌의 상세정보에 통장부기명으로 "부산수련동문회"을 입력하고 예금통장의 예금주란에 아래 그림과 같이 원고의 명칭을 부기하였다.

[아래 그림]

(그림 생략)

- 6) 한편 소외 1은 △△신협에 2011. 10. 26. 개설한 비과세 예금계좌(번호 (계좌번호 3 생략))를 소지하고 있는데, 부산지 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기270, 2018타기294로 위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포베이가 2차에 걸쳐 한 채권압 류명령의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하였다.
- [인정근거] 다툼없는 사실, 갑1, 2, 5 내지 11호증, 을4호증의 각 기재, 부산△△신용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- 비록 이 사건 예금계좌들에 대한 예금계약에서 실명확인은 개인 소외 1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지만,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△△신협에 소외 1 이전부터 대표자인 회장 명의로 회비를 예탁하여 와서 △△신협이 과거 원고 단체에 대한 자료를 교부받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, 원고의 전 회장과 신 회장인 소외 2와 소외 1이 함께 △△신협에 가서 소외 2가 기왕에 자신의 명의로 예탁하였던 원고의 회비를 해지하면서 함께 이 사건 예금계좌들을 개설하여 예탁한 점, 소외 1은 △△신협에 이미 계좌(번호 (계좌번호 3 생략))를 가지고 있었는데 △△신협에게 새로 조합거래신청을 하며 원고의 인감을 사용한 점, 통장개설목적을 '동호회 통장'으로 밝힌 점, △△신협도 계좌정보에 원고 명의를 통장부기명으로 입력하고 이 사건 예금계좌들의 예금자란의 소외 1 이름에 원고 명의를 부기하여 표시하고 있는 점, 행위당사자인 소외 1은 개인인 동시에 원고의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, 원고가 2018. 9.에 이르기까지 고유번호 등을 발부받지 않아 이를 제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, 이 사건 예금계좌들에 대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개인인 소외 1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.
- 그렇다면 이 사건 예금계좌들의 예금채권자가 소외 1이 아닌 원고임을 전제로, 소외 1의 채권자들이 피고들의 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.

4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이경희